육아정책 소식

관계부처 합동「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 학부모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교육부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7월 19일(화)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 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7월 13일(수) 공정거래위 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하였다. 7월 19일(화)부터 시작된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하며,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착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발표하였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 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핵심 내용
교통안전	안전하고 편리한 등 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품안전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물리적(미끄러짐·추락 등)·화학적(유해물질 노출) 안전기준을 지속 정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한다.
식품안전	어린이의 활동 공간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하여 식생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 위생을 체 계적으로 관리한다.
환경안전	어린이용품과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한다.
시설안전	데이터 기반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제도의 정착을 추진한다.
안전교육	어린이안전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 육을 활성화한다.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이번에 발표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재활원과 세이프키즈코리아가 함께하는 어린이 손상예방 안전 캠페인 실시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국제 어린이 안전 민간기구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협업하여 2022년 6월 22일(수)~7월 7일(목)까지 「2022년 찾아가는 손상 예방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2005년부터「장애인복지법」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강사가 유치원, 초·중·고교, 성인 대상으로 손상예방과 관련하여 100만 명 이상을 교육하였으며, 이번 캠페인은 민간기관인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협업하여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조기안전교육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소 식 마 당

이번 캠페인은 아이들이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장애의 이해·사고 및 손상예방법·손상 예방 5계명 다짐 등으로 구성된 이론형 손상 예방 안전교육(1단계)과 세이프키즈코리아의 체험형 안전교육 '버클업 클래스'(2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 이론형 손상 예방 안전교육에서 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손상 예방 5계명 다짐을 통해 실천을 약속하며, 2단계 체험형 안전교육 '버클업클래스'에서 어린이들이 카시트를 활용한 안전벨트 착용·교구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사각지대 체험을 직접 해봄으로써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캠페인은 서울양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상계삼성어린이집, 서울동신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서울윤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4곳에서 진행되었고, 5세~7세 어린이를 대상 으로 이론형 손상예방 안전교육 4회와 체험형 안전교육 10회를 시행하였다.

또한 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에게 국립재활원에서 제작한 안전벨트 인형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손상예방 5계명 다짐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하여 7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14.3%)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기본법」제정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7월 14일(목)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총 5차)"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당사자, 아동 관련 단체, 학계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석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방법, 아동 정책 발전 방향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이번 1차 토론을 시작으로, 아동 건강,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방향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하여 7~9월에 걸쳐 개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례	주제	일시·장소
1차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	7.14(목) 14:00 /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
2차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	7.29(금) 14:00 / 용산청소년센터 소극장
3차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 놀 권리와 쉴 권리	8.4(목) 14:00 /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
4차	디지털 사회 아동의 참여와 보호의 조화	8.18(목) 14:00 /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
- 5차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방향	9.1(목) 14:00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냉 · 난방비 긴급 지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염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 등 고물가로 인해 아동의 안전한 돌봄이 취약해질 수 있어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냉·난방비 비용 및 냉·난방기 보급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마을돌봄시설('22.5월 기준 5,060개소)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 10만 원씩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난방비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7월 중으로 긴급 지원 운영비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였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원기준 및 필요성에 부합하는 시설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전액 국고로 지원(별도 시설부담금 없음)되며,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8.1.시행)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월)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애아동을 통합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 기준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범위 등을 개선하고, 6월 22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였다. 개정된 「2022년 보육사업안내」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정원을 확대하였다.

둘째, 대체교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넷째, 2022년 6월 22일 개정 시행된 영유아보육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였다.

중증 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 확충 추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8월 25일(목) 오전 11시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수의료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빠른 시간에 보건의료 인프라와 제도를 안착시키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다.

최근 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사건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고,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임을 밝혔다.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8차에 걸쳐 5개 분야, 24개 항목을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 계측을 통해 실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차수의 검진 기간 내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단, 코로나19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는 아래와 같이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영유아검진 치수별 월령 〉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영유아검진	생후 14~35일	4~6개월	9~12 개월	18~24 개월	30~36 개월	42~48 개월	54~60 개월	66~71 개월
(구강검진)				(18~29 개월)	(30~41 개월)	(42~53 개월)	(54~65 개월)	

유아 의무교육 (K-학년제) 등 아동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정책 제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아동돌봄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중앙대 최영교수, 이하 분과위)는 그간 아동돌봄 정책의 발전 과정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으나, 실현되지 못했던 주요 담론을 주제로 선정하고, 집중논의를 통해 향후 아동돌봄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제안에는 무엇보다 아동돌봄 정책이 공급자와 성인중심에서 '아동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하여, 현행 아동돌봄 정책의 쟁점과 문제점을 진단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사항과 대안을 담았다. 논의 주제는 이슈페이퍼 발간 전 '아동돌봄정책포럼'을 실시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현재 영유아기 돌봄정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구조와 민간(사립) 의존적인 정책으로 인해 기관 간 시설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에 따른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교육격차가 초등교육 이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영유아기 제도 변화 방안의 하나로 유아 의무교육도입을 제안하였다.

유아 의무교육(K-학년제)은 영유아기 불평등 완화가 사회투자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

소 식 마 당

이 있으므로, 유아교육과 돌봄의 일정 기간을 국가에서 책임지자는 의미로서, 현재 무 상보육교육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취학 전 아동과 부모가 경험하는 교육보육 격차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하는 해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돌봄 정책 통합조정통합기구 설치'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돌봄 정책이 부처별사 업별로 구분되어 서비스별 질적 격차 및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동돌봄 정책의 조정 또는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는 지원 대상, 공급 목표율, (가칭)표준돌봄비용 등의 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돌봄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재정적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지향이 돌봄 인프라 확대와 비용 부담만이 아닌 인력 등 돌봄의 질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적, 제도적 차원의 근본적 기반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포럼에서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함께 토론한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본 이슈페이퍼는 위원회 홈페이지(www.betterfuture.go.kr) 자료실에서 다유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이 직접 만드는 다문화가족 정책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 등 의견을 개진하는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의 제6기 위원을 8월 1일(월)까지 공개 모집하였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이되면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 제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다문화가족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15년 발족되었으며 그동안 총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전문성, 참여의지, 출신 국가,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0명의 위원을 선발하였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 여위원들은 올 하반기 개최될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하 게 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최근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정부는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개요 〉 -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월 1,695,244원, 2인가구)
 -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월 1,956,051원, 2인가구)
-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급
 -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별도 지급('21.5.~)
 -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월 35만원 지급